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20일, 최보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9.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최보훈의원)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약 500여종에 이르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계 등에서도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

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 유발,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질의하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의 위탁규정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약류 분류 등과 같은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여부나 분류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한 심사와 관련된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질의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안 제6조의3 등: 마약류 등 해당여부 심사 근거 및 수수료 신설) 개정안은 마약류 등에 대한 해당 여부 심사를 법제화하고(안 제6조의3)

심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안 제55조제4호) 내용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마약류 등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원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마약류 등 해당 여부 심사를 법제화하여 해당 여부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확보하게 하고,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상 민간이 법령과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등을 통해 마약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법률에 마약류 등 해당여부 심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두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만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행정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신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의무 절차로 오인될 수 있으며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도 심사를 통해 확인을 얻어야 한다는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
-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행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업계의 수수료 부담도 필요 이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안 제6조의3제1항제2호는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이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따른 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해당하는 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제제이므로 문언상 모순이 발생하는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55조: 승인 수수료 신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상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안 제6조의3에 따라 마약류 등 해당여부 심사를 받으려는 자에게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승인 심사에도 행정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로 이해됨.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도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수수료 납부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승인 또는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안 제56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위탁 근거 신설)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법」 상 사단법인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단순·반복적이거나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이 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마약류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 대상 업무와 수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제반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위탁 규정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